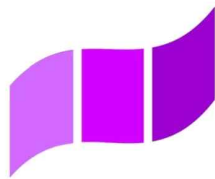


강 령

2024.1.13.



금융개혁당

금융개혁당은 대한민국 금융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금융자산을 보호하고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선순환 금융체계를 확립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그 목적으로 하는 정당이다.

1920년 5월 대한민국 최초로 경성주식현물거래소가 개설된 이후 현재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투자 역사는 100여 년이 넘게 이어져 왔다. 한국경제가 눈부신 성장을 이루기 이전부터 금융투자 역사가 시작되었지만 선진국이 된 현재도 한국금융은 기득권 세력에 막혀 후진적인 체계를 갖고 있어 국민들과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받고 있다. 금융산업을 개혁해야 한국경제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금융은 1,700만 개인투자자를 넘어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분야이다. 금융선진화가 이뤄진다면 국민 전체에 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고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다. 불공정한 투자 환경으로 인해 일부 소수에게 경제적 이익이 집중되고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있는 현재의 금융체계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개혁당은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갖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이 성장하고 그 경제적 이익이 다시 투자자와 국가경제 발전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일등 국가가 되고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1. 금융규제 강화 및 투명성 확보

- 가. 금융시장의 민주화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한다. 특수관계인 및 지배주주의 사적이익 편취방지 및 지배구조 개선, 부당거래 해소등을 위해 강력한 규제를 마련하고, 금융기관의 투명성을 높여 금융시스템의 신뢰도를 강화함.
- 나.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체계를 구축하여, 금융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억제하고 불공정한 영업행위를 규제함.
- 다.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더 강력하게 감독하고, 감사 체계를 강화하여 부조리나 비윤리적인 행태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함.
- 라.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움.
 - 1) 공매도 담보 비율은 개인 · 기관 · 외국인 모두 동일하게 140% 이상으로 설정
 - 2) 공매도 상환 기한은 개인 · 기관 · 외국인 모두 연장 없이 동일하게 90일로 유지
 - 3) 모든 거래 주체의 공매도 거래는 반드시 전산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개편

2. 신뢰성 있는 금융정보 제공

금융제도혁신을 바탕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불안정한 금융질서와 금융시장의 관리 · 감독체계를 마련하여 금융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도입함.

3. 금융 책임성 확립

금산분리의 원칙을 통해 금융기관들에게 윤리,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경제적 피해를 억제함.

4. 제재와 벌칙 강화

불법적 금융, 경제행위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고 부조리나 비윤리적인 행동에 대한 제재와 견제를 강화하여 이를 예방하고,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함.

5. 소비자 보호 강화

- 가.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하여, 금융상품의 공정한 판매 및 고객 서비스 향상을 촉진함.
- 나.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융환경을 창출함.
- 다. 소비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여 고객들을 부당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
- 라. 높은 위험을 내포하거나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나 투자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함.

6. 디지털 금융 혁신 지원

- 가. 혁신적인 금융기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보급을 촉진하여 편리하고 효율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함.
- 나. 금융 기술(Fintech) 및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여 혁신적이고 안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
- 다. 스마트 계약과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금융 거래를 지원함.

7. 스마트 투자 활성화

지능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 포트폴리오 관리와 AI를 활용한 투자 조언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속가능한 투자 및 사회적 가치 투자를 장려함.

8. 금융 혁신 제도마련 및 금융선진화 조성

- 가. 금융주체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지식,기술,정보등을 체계화하여 금융선진 제도를 마련함.
- 나. 금융기술 및 혁신기업들이 모여 글로벌한 금융기업과 금융유니콘 기업을 육성하여 선진금융 생태계를 육성함.

9. 교육 및 금융문맹 해소

- 가. 금융문맹을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금융시스템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함.
- 나. 디지털 금융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여 디지털 금융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10. 지속가능한 투자 촉진

- 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 기업의 투자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을 고려한 증권투자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금융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함.
- 나. 환경친화적인 투자와 금융기관의 전산화, 공시강화, 금융 시장의 정보 공개 확대 등을 추진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 환경을 마련함.

11. 금융종사자 윤리교육 및 처벌 강화

금융 종사자 및 관련 업계 인력에게 금융 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예방하는 교육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금융문화를 정착시킴.

12. 시민 참여와 소통

- 가.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금융정책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촉진함.
- 나. 투명성 있는 의사결정과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금융개혁당은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공함.

당 헌

[제 1 장 총칙]

제 1 조(명칭) 우리 당의 명칭은 ‘금융개혁당’이라 한다. 약칭 ‘금혁당’ 이라 한다.

제 2 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한 조직과 활동의 민주적 개혁과 운영 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조직) 서울특별시에 중앙당을 두고,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둔다.

[제 2 장 당원]

제 4 조(당원) ① 우리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 절차를 밟아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규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권리당원이 된다.

③ 당원의 입당과 탈당, 재입당, 이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 조(당비) ① 당원은 소정의 당비를 납부한다.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 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은 일반당원으로서 당에서 실시하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권리당원의 당비미납에 의한 권리 제한의 세부 요건은 당규로 정한다.

③ 당원은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경우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권리를 정지 한다.

제 6 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당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규에 따라 당의 의사결정과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2. 당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
3. 당원으로서의 권리 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4. 당의 일상적 관심 사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의사를 표시할 권리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당헌, 당규를 지키고 당의 결정과 방침에 따를 의무
2. 당규에 따라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3.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4. 당원으로서의 청렴성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

③ 권리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 당규가 정하는 당직·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④ 권리당원은 당비 규정에 의거 당비를 납부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 7 조(여성당원과 장애인의 지위와 권리) ①우리 당은 여성 및 장애인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및 권리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할 수 있다.

② 당직과 공직선거의 후보자 추천에 있어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기타 세부적 필요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 장 의결기관]

제 1 절 당원총회

제 8 조(지위와 구성) ① 당원총회는 우리 당의 조직진로에 관해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당의 중요 사안에 대해 협의 및 의결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② 당원총회는 전국의 모든 권리당원으로 구성한다. 당규에 의해 당원총회 구성원 기준을 일상적 권리당원 기준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 9 조(당원총회 의장과 부의장) ① 당원총회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을 두며 당규에 따라 부의장을 둘 수 있다.

② 당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은 당원총회 구성원 가운데 선출한다.

③ 당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회기와 같으며,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0 조(권한) 당원총회는 당의 합당과 해산등 당 조직의 진로에 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제 11 조(소집) ① 당원총회는 당대의원대회 결정 또는 당원총회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90 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당원총회의 준비를 위하여 당대의원대회 산하에 당원총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당원총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 절 당 대의원대회

제 12 조(지위와 구성) ① 당 대의원대회는 우리 당의 조직진로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이다.

② 당 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공동대표, 원내대표
2. 당무위원
3. 당 소속 국회의원
4. 정책연구소장
5. 사무총장, 정책위원회의장, 금융교육위원장
6. 시·도당 위원장(상임)
7.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8.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9. 의제기구 위원장(상임)
10. 선출직 대의원

③ 선출직 대의원의 임기는 2 년으로 하며, 총수, 종류, 선출기관, 선출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3 조(당대의원대회 의장) 당대의원대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으며,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4 조(권한) 당 대의원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강령과 기본정책의 채택 및 변경
2. 당헌,당규의 제정 및 개정
3. 당원총회 소집 요구
4. 당의 합당, 해산 및 재창당 관한 사항의 의결
5. 시·도당 해산 승인
6. 예산결산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당기위원회 위원장 및위원 임명
7. 공직후보자 인준(국회의원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8. 당무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의결
9. 기타 중요한 안건의 결정
10.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제 15 조(소집) ① 정기 당대의원대회는 2 년마다 당대표가 소집한다.

② 임시 당대의원대회는 당무위원회 결정 또는 당 대의원대회 재적 구성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60 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당대의원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당무위원회 산하에 당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당대의원대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 절 당무위원회

제 16 조(지위와 구성) ① 당무위원회는 당대의원대회의 수임사항과 당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일상적 의결기관이다.

② 당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당대표, 공동대표, 원내대표

2.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금융개혁위원장
3. 시·도당 위원장
4. 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대표(광역/기초 각 1인)
5. 당 소속 지방의회의원 대표(광역/기초 각 1인)
6. 의제기구 위원장
7. 당대표가 추천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한 추천직 당무위원(당무위원 재적 20% 이내)

제 17 조(당무위원회 의장) 당무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맡으며,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18 조(권한) 당무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 대의원대회에서 위임한 안건의 처리
2. 강령, 기본정책 및 당헌 등 당 대의원대회 안건 발의
3. 임시 당 대의원대회 소집 요구
4. 당규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
5. 당헌, 당규의 유권해석
6. 시·도당 설치 승인 및 사고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7. 의제기구 설치, 해산 승인 및 사고 판정과 직무대행자 지정
8. 주요정책 등 중요한 당 방침 심의, 의결
9. 예산과 결산의 심의, 의결
10. 사무총장, 정책위원회 의장, 금융개혁위원장 인준
11.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임명
12. 공직후보자 인준(재선거, 보궐선거 후보자)
13. 당대표가 제출한 안건의 심의
14.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 제 19 조(소집)** ① 정기 당무위원회는 분기마다 당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 ② 임시 당무위원회는 당대표 또는 당무위원회 재적 구성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당대표가 30 일 이내에 소집한다.
- ③ 당무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 장 집행기관]

제 1 절 대표단

- 제 20 조(대표단)** ① 대표단은 당대표, 공동대표, 원내대표, 당대표가 추천한 2 인의 공동대표로 구성한다.
- ② 당에는 당대표 1 인을 두며, 수인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 ③ 당대표와 공동대표는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 ④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중 1 인을 선출하며, 임기는 1 년으로 한다.
- ⑤ 당대표가 궐위된 경우, 당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는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 1 인, 원내대표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단, 공동대표 및 원내대표가 없을 경우, 당무위원 중에서 호선한 1 인이 권한을 대행한다.
- ⑥ 당대표가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공동대표 중에서 호선한 1 인, 원내대표, 사무총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 ⑦ 대표단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1 조(당대표) ① 당대표는 당을 대표하고, 당무를 통할한다.

② 당대표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당무 전반에 관한 집행, 조정 및 감독
2. 당의 주요 회의 소집 및 주재
3. 주요 당직자 추천권 및 임면권
4. 당 예산의 편성
5. 기타 당헌, 당규에서 정한 권한

③ 당대표는 당헌, 당규에 따라 확정된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한다.

제 22 조(공동대표) 공동대표는 대표단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적으로 당 대표와 협의하여 당무를 처리하고, 당대표의 궐위 시 차기 당대표 선출 까지 권한을 대행한다.

제 23 조(원내대표) 원내대표는 대표단회의 구성원으로서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

제 24 조(대표단회의) ① 당무 전반 및 법률안을 포함한 주요 정책 등에 관해 협의하기 위해 대표단회의를 둔다.

② 대표단회의는 대표단으로 구성한다.

③ 대표단회의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 절 사무총국

제 25 조(사무총국) ① 당의 일상 업무 집행을 위해 중앙당에 사무총국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한다.

③ 사무총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표단을 보좌하고 사무총국 업무를 총괄

- 2. 예산안 및 결산보고서 제출을 포함한 회계 운용
- 3. 당원명부 등 관계 서류와 인장 등의 관리
- ④ 사무총국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 절 정책위원회

제 26 조(정책위원회) ① 당의 정책 연구 및 입안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둔다.

- ② 정책위원회 의장은 당대표가 임명하고 당무위원회가 인준한다.
- ③ 정책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 절 특별기구

제 27 조(특별기구) ① 당대표는 특정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대표단과 협의를 거쳐 특별위원회 등 특별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특별기구의 장은 당대표가 대표단과 협의를 거쳐 임명한다.
- ③ 특별기구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5 장 원내기구]

제 1 절 의원총회

제 28 조(의원총회) ① 당 소속 국회의원으로 의원총회를 구성한다.

- ② 의원총회는 원내 최고의결기구로서 당무위원회 방침에 따라 원내 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 ③ 의원총회의 소집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 절 원내대표

- 제 29 조(원내대표)** ①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 ② 원내대표의 선출과 권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6 장 정책연구소]

- 제 30 조(정책연구소)** ① 당의 목적과 정책의 중장기적 연구를 위해 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정책연구소는 중앙당에 별도 법인을 둘 수 있다.
- ③ 정책연구소의 운영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한다.
- ④ 정책연구소 이사장은 당대표가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⑤ 정책연구소의 이사회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및 연구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 7 장 지역조직]

제 1 절 시·도당

제 31 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시·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지역기반 광역당부로서 해당 시·도를 총괄한다.

② 시·도당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③ 위원장은 당원 직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수와 선출 방식 등은 당규로 정한다.

⑤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위원장이 사무처장을 임명한다.

⑥ 시·도당의 설치,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2 조(시·도당의 창당 및 해산) 시·도당의 창당은 당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산은 당 대의원대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취소 사유와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2 절 지역위원회

제 33 조(지역위원회) ① 시·도당 내에 기초당부로서 지역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와 명칭의 기초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기초조직의 설치,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8 장 재정]

제 34 조(재정)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후원금, 정당보조금,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으로 구성된다.

-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 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 ③ 일반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 ④ 특별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 ⑤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5 조(중앙당후원회) ① 당대표는 중앙당에 후원금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중앙당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중앙당후원회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 및 후원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 36 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 ②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7 조(예산결산위원회) ① 당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 결산을 심의, 감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위원회를 둔다.

- ② 예산결산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대표가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③ 예산결산위원회는 매년 예산 및 결산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단 회의에 보고하고 당무위원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 ④ 예산결산위원의 수, 예산결산위원회의 권한,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9 장 선거관리]

제 38 조(선거관리위원회) ① 당의 각종 선거관련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련 규정 등에 대한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가지며, 선거효력의 최종적 판정 권한을 가진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대표가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⑤ 선거관리위원의 수,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39 조(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직선거후보자의 자격심사를 위해 공직선거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인 이상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대표가 추천하고 당무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③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로부터 후보자 등록자격을 부여받지 못한 자는 국가선관위 예비후보자, 당내 공직후보자 선출선거의 후보자, 국가선관위 후보자로서 등록할 수 없다.

④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위원의 수,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위원회의 권한,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0 조(공직선거후보자 선출) ① 공직선거후보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구 내 권리당원을 선거인으로 하여 선출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 선거구를 확대,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의 1/2 이상은 여성으로 하며, 여성에게 정당명부의 흡수순번을 부여한다.

③ 당무위원회 결정이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가 제출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비례대표 광역, 기초의원 후보자 명부에 대해 일괄하여 찬반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여성 순번은 2항과 동일하다.

④ 나머지 공직선거후보자의 선출방법은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수보다 많은 경우에 대해서는 선거권자가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해야 할 수만큼의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되, 입후보한 후보자의 수가 선출해야 하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수와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는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로 선출한다.

⑤ 공직선거후보자를 긴급히 선출하거나 선거구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각 선거구, 선거인, 시한, 기간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변경 사유와 변경 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⑥ 당규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 선거인을 확대할 수 있다.

[제10장 포상과 징계]

제 41 조(포상) ① 당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당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포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당대표가 결정한다.

제 42 조(징계) 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사유, 종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3 조(윤리위원회) ① 당원의 징계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최고기관으로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수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대표가 추천하고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임명한다.

③ 당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를 거치는 외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윤리위원의 수, 윤리위원회의 권한, 직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 44 조(의결정족수) ① 조직진로에 관한 안건은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1 항 이외의 안건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1/2 이상의 출석과 1/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5 조(합당과 해산, 청산) ①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당원 총회 또는 당원총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의 당무위원회 또는 당무위원회가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시·도당 또는 당내 각급 기구가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당무위원회에서 청산한다.

제 46 조(공인전자서명을 통한 의결) ① 의결기관의 결의는 정당법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통하여도 의결할 수 있다.

②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의결할 수 있는 해당 기관, 대상 안건, 의결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 47 조(당원명부 등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는 때에는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당원명부 등의 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되는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② 서류와 인장의 종류와 인계 기한 등은 관계 법령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르며 인계 절차와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③ 1 항에 따라 전환한 대의원 혹은 당무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부칙 <2024. 3. 13.>

제 1 조(시행시기) 이 당헌은 2024. 3. 13. 개최한 창당대회에서 채택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 조(초대 당대표, 당원총회의장 및 당무위원 선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당헌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당대표, 당원총회 의장 등은 창당 대회에서 추대하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② 초대 당대표 등의 임기는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대회까지로 한다. 다만,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3 조 (초대 당대표 및 당무위원회 권한 등에 관한 특례)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당대표는 당무위원회의 인준 없이 초대 대표단, 당직자 등을 임명할 수 있고, 당대의원대회 구성 및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당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대표가 필요한 사항을 결정·시행할 수 있다.

제 4 조 (시도당 위원장 등 선출 및 권한 부여에 관한 특례) 시도당 초대 위원장의 경우 창당대회에서 선출하거나 초대 당대표가 임명할 수 있다.

제 5 조 (당무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등) ①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구성하는 당무위원회 위원은 부칙 제 2 조 제 1 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 등이 대표단과 협의하여 임명한다.

② 당대의원대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당무위원회가 당대의원대회 권한을 행

③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 6 조 (당의 합당과 해산 등) ①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당대의원대회까지 우리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거나 해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합당이나 해산을 할 수 있다.

②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 7 조 (당헌 개정에 관한 특례 등) ①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당헌 시행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당대의원대회까지 당헌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당헌을 개정할 수 있다.

②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 8 조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출에 관한 특례) ① 이 당헌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 22 대 국회의원선거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대하여는 선거 일정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당무위원회 의결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별도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직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당무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대표단이 당무위원회 권한을 행사한다.

제 9 조 (기타 위임) 당규 제정 이전이라도 당무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칙 제 2 조 제 1 항에 따라 선출된 당대표가 대표단과 협의하여 집행기구 등을 설치할 수 있다.